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알리안츠프리미어즉시연금보험

나. 보험의 종류 및 연금지급형태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1형 즉시형, 2형 거치형	종신연금형 (개인계약/부부계약)	정액형(10년,20년,100세보증)
		소득보장형(10년,20년보증)
	확정연금형	확정연금형(5년,10년,15년,20년,30년)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환급플랜(10년,15년,20년)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의 종류	보험 기간			
즉시형	종신연금형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계약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30년)까지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환급플랜	계약일부터 만기(10년·15년·20년)까지	
거치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Y세(45세 ~ 최고 7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 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30년)까지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환급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만기(10년·15년·20년)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의 종류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연금개시나이(Y)	피보험자 가입나이
즉시형	일시납	45세 ~ 75세	45세 ~ 75세
거치형	일시납	45세 ~ 75세	(Y-5)세 ~ (Y-1)세

※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로 최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거치형에 한함)

- (1)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1회에 납입 가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 (3) ‘(2)’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만 한다.

(4)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일시납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시납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일시납보험료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 1억 초과금액의 0.7%
일시납보험료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 3억 초과금액의 1.0% + 140만원
일시납보험료 5억원 초과	일시납보험료 5억 초과금액의 1.2% + 340만원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할인된 금액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더하여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가’ 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 종신편안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라. ‘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 바.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 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운용자산수익률(\%)} \\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 \text{투자지출률(\%)} \\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 - I : \text{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 - E : \text{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end{aligned}$$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기타

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에 한하여 연금지급주기는 월단위로 한다.

나.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